

IEC 정관 및 절차 규정

자료제공 · 기술표준원 전자정보표준과

정 관

전 문

국제전기기술위원회는 1904년 9월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개최된 국제전기총회에서 개최된 정부 대표자회의의 결의에 따라 설립된 조직이다. 1906년 런던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작성된 첫 번째 정관은 1908년에 채택되었고 1949년, 1963년, 1974년, 1991년 및 1993년에 개정되었다. 현행 정관은 1993년판을 개정한 것이다.

제1조 명 칭

동 기구의 명칭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이며, 이하 위원회라 한다.

IEC라 약기한다. 동 기구는 스위스 민법 제60조에 따르는 법인으로서 설립되었다.

제2조 목 적

동 위원회의 목적은 전기 및 전자분야에서 규격에 대한 준수 확인 등과 같은 표준화에 대한 제반 현안 및 관련 사항에 대한 국제간 협력을 촉진하여 국제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 목적은 특히 국제규격을 비롯한 발간물을 출간함으로써 달성된다.

제3조 소재지

동위원회의 소재지는 총회가 결정한다. 동 정관 발간 당시 위원회의 소재지는 스위스 제네바이다.

제4조 타국제기구와의 관계

동 위원회는 검토중인 문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국제기구와 협조할 수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와의 협력 조건, 책임구분 및 활동 영역은 양기구간의 협정에 의거한다.

제5조 정회원 및 준회원 자격

동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국가는 자국내에 전기기술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동위원회는 선출과 관련하여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ttee)로 불린다.

국제연합기구(UNO)에 의해 공식 인정된 국가의 국가위원회만이 동 위원회의 정회원 또는 준회원이 될 수 있다. 국가위원회는 동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분야에서 자국의 이해를 전적으로 대표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위원회의 회원국은 정관 및 절차 규정을 준수하기로 동의한 국가위원회이다. 각 국가에는 단 하나의 국가위원회만이 존재한다.

각국의 경제 활동 수준에 따라서 절차 규정 제11항에 입각하여 국가위원회는 정회원(Member), 준회원(Associate member)으로 인정된다. 신규 정회원 또는 준회원의 가입은 총회에서 투표에 의한다. (정관24조)

정회원으로 가입한 모든 국가위원회는 이사회의 승인으로 발간된 ISO/IEC 지침에서 규정에 따라, P 멤버, O 멤버로서 위원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준회원으로 가입한 국가위원회는 이 정관의 19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정회원 국가위원회 분담금보다 감소된 분담금을 납부한다. 준회원국의 대표는 위원회의 어떤 공식적인 지위에 선출될 수 없다.

정회원 및 준회원 국가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a) 동 위원회 목적의 추진

b) 동 위원회 활동의 지원

c) 동 위원회의 국제규격을 자국의 국가 또는 지역 규격에 최대한 명확한 방법으로 시행

준회원 지위의 지속기간에는 제한이 없지만, 준회원 자격 기준이 본래 경제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준회원국의 경제상황에 변화가 일어나면 그 준회원자격에도 변동될 수 있다. 신청 국가의 경제조건이 정회원국 수준일 경우, 준회원을 신청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정회원 지위를 갖고 있는 국가위원회가 자격이 정지된다 하더라도 준회원 신청을 할 수 없다.

제6조 권 한

정회원 국가위원회들이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한 사항이나, 회의나 통신으로, 총회로부터 결정 권한을 위임받은 총회상임위원회 의원들에 의한 결의사항은 동 위원회의 결정으로 간주한다. 각 국가위원회는 단 하나의 투표권을 갖는다.

제7조 위원회의 조직

동 위원회의 최고 기관은 총회다(정관 제8조). 동 위원회는 또한 실무 또는 자문기관과 임원으로 구성

되어 있다(정관 8조~19조). 동 위원회의 임원은 회장, 고문단(Deputy President)(전임회장 또는 회장 당선자), 부회장, 재무관 및 사무총장이다.

임원은 직권으로 동 위원회의 어떤 회의에도 참가할 수는 있으나, 회장을 제외하고는 투표권이 없다(제13조 참조). 통상적으로, 피선된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익년의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총회는 다른 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또는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밖의 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8조 총회

동 위원회는 총회에 의해 운영된다.

총회는 이사회와 적합성평가위원회가 각기 맡고 있는 규격 및 적합성평가 분야에서의 일정한 관리 책임 및 IEC 작업에 대한 모든 관리를 총회상임위원회에 위임한다.

총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a) 위원회 회장
- b) 모든 정회원 국가위원회 회장들
- c) 고문단(전임 회장 또는 회장 당선자)
- d) 위원회의 부회장들
- e) 위원회의 역대 회장들
- f) 재무관
- g) 사무총장, 직권에 의해 준회원 국가위원회 회장은 총회 위원이 될 수 없고, 옵저버(observer)로서 총회에 참석한다. 총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준회원 국가위원회는 최소한 총회 개최 1개월 전에 사무총장에게 의안을 송부한다. 총회기간중 사무총장은 이 의안을 심의안으로 상정한다. 회장은 이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의안을 제출한 준회원 국가위원회의 대표를 초청하여 심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정회원 국가위원회장만이 투표권을 가지며, 이는 지명대리인에 의해 대표될 수 있다. 총회의 특별한 임무는 절차규정에 대한 부칙2에 수록되어 있다. 총회는 적어도 년 1회 개최되지만, 차기 총회 개최이전에도 회장 또는 정회원 국가위원회장의 1/5의 요청시 소집될 수 있다.

제9조 총회상임위원회

총회가 정한 범위내에서, 총회상임위원회는 절차 규정에 대한 부칙2에 열거된 특별한 임무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총회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위원회의 회장(직권, 투표권 없음)
- 고문단(직권, 투표권 없음)
- 부회장(직권, 투표권 없음)
- 재무관(직권, 투표권 없음)
- 사무총장(직권, 투표권 없음)
-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정회원 국가위원회로부터 선출한 개별 위원
 - 재정그룹 A에 속하는 국가위원회에서 각 1명
 - 재정그룹 B에 속하는 국가위원회에서 각 5명
 - 재정그룹 C에 속하는 국가위원회에서 각 5명

총회상임위원회는 적어도 년 3회 소집되며 회장이 그 시기를 정한다. 총회상임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10조 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감독한다.

- 총회 및 총회상임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 총회상임위원회를 위한 의제와 문서의 준비
- 중앙사무국의 운영
- 국가위원회와의 연락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위원회 회장
- 고문단
- 부회장들
- 재무관
- 사무총장(직권)

집행위원회는 적어도 년 4회, 동 위원회 회장의 소집에 의해서 개최된다. 집행위원회는 총회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1조 이사회

총회는 동 위원회의 규격 업무에 대한 관리를 이사회에 위임한다. 이사회는 규격 업무를 적절하고 신속히 수행키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조치를 취한다(절차 규정에 대한 부칙2 참조).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의장(투표권 없음)
- 총회에서 절차 규정 4항 a)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6명의 위원들(그리고 그 대리인들) (참고로, 이들 위원들은 자동임명위원이라 함)
- 총회에서 절차규정 4항 b)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9명의 위원들(그리고 그 대리인들)
- 사무총장(직권, 투표권 없음)

의장은 절차 규정 4항의 규정에 따라 3년의 임기로 총회에서 선출된다. 의장은 연임할 수 있다. 이사회 의장은 임기동안 직권으로 동 위원회의 부회장이 된다. 이사회의 15명 선출된 위원들만이 투표권을 가지며, 이는 대리인에 의해 대표될 수 있다. 이사회에 대표를 파견하지 못한 어떤 정회원 국가위원회라도 안전을 제안하면, 의장은 이들에게 해당 제안의 토론에 참석할 대표단을 파견토록 요청해야 한다. 이사회나 그 산하 자문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준회원 국가위원회는 최소한 회의 개최 1개월전에 사무총장에게 의안을 송부한다. 회의기간중 사무총장은 이 의안을 심의안으로 상정한다.

의장은 이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의안을 제출한 준회원 국가위원회 대표를 초청하여 심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이사회는 통상 최소한 년 3회 개최되며, 이중 한번은 총회 회의기간중에 개최한다. 그 사이에 회장 또는 4개 이사국의 요청이 있을시 개최될 수 있다. 이사회의 모든 의결 사항을 총회상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 회의에 관한 모든 보고서는 중앙사무국에 보존되어야 하고, 회의의 사록이 전체 국가위원회에 송부되어야 한다.

제12조 적합성평가위원회

총회는 동 위원회의 적합성 평가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를 적합성평가위원회에 위임한다. 적합성 평가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적합성 평가 활동에 대한 운영을 촉진하고 조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절차 규정 부칙2 참조).

적합성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의장(투표권 없음)
- 절차 규정 5항의 규정에 의해 선출된 12명의 개별 회원(그리고 이들의 대리인)
- 동 위원회의 각 적합성 평가 기구의 대표자 1인(투표권 없음)
- 재무관(직권, 투표권 없음)
- 사무총장(직권, 투표권 없음)

의장은 절차 규정 5항의 규정에 따라 3년의 임기로 총회에 의해 지명된다. 의장은 1회에 한하여 그 직에 바로 연임할 수 있다. 적합성 평가위원회 의장은 자신의 임기동안 직권에 의해 동 위원회의 부의장

이 된다. 의장은 적합성 평가위원회 구성원의 어떤 부문의 이익도 대표해서는 안된다. 의장은 직권에 의해 투표권 없이 평가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적합성 평가위원회의 12명의 회원들만이 투표권을 가지며, 이는 대리인에 의해 대표될 수 있다. 적합성 평가위원회에 제안을 한 정회원 국가위원회들은 회장의 초청에 따라 해당 제안의 토론에 참석토론 대표단을 파견하여야 한다. 적합성 평가위원회는 적어도 1년에 1회 개최되지만, 그 사이에 회장 또는 4개국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개최될 수 있다. 적합성 평가위원회는 모든 결의 사항을 총회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적합성 평가위원회 회의에 대한 모든 기록이 중앙사무국에 보존되어야 하고, 의사록이 전체 국가위원회에 송부되어야 한다.

제13조 회 장

회장의 임기는 3년 단임이다. 회장의 임기 만료시 회장 당선자(제14조 참조)가 취임한다. 회장의 임기 만료 후, 전임 회장으로 2년 단임의 임원으로서 그 임무를 유지한다. 회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a) 동 위원회를 대표
- b) 총회, 총회상임위원회, 집행위원회 관할
- c) (필요시) 총회에서 의사결정 투표행사
- d)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결정
- e) 총회와 차기 총회 사이에 필요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취함

회장은 그의 업무 일부를 다른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회장은 위의 c)항을 제외한 모든 회의에 투표권 없이 참가할 수 있다.

회장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고문단이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14조 회장당선자

동 위원회의 회장 당선자는 정관 제24조 제2절차 규정에 따라 투표로 선출한다. 회장 당선자의 선출은 회장의 임기가 2년째 되는 해에 실시되며, 회장 당선자는 직무 수행 1년후에 회장으로 취임한다.

제15조 부회장

부회장의 수는 총회에서 결정하며, 3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사회 의장과 적합성 평가위원회 의장은 그들의 임기동안 직권으로 동 위원회의 부회장이 된다. 총회는 특정한 한정된 임무를 담당할 1명의 부회장을 선출할 수도 있다. 동 위원회의 부회장들은 직권에 의해 총회와 총회상임위원회, 집행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부회장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바로 연임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이유로든 부회장이 그의 임

기를 채우지 못할 경우, 잔임기간동안의 새로운 부회장이 지체없이 선출되며, 이 부회장은 다음 임기에 재출마할 수 있다.

제16조 재무관

위원회의 재무관은 절차 규정 10항에 의거 투표로 선출한다. 재무관의 임기는 3년이며 바로 연임할 수 있다. 재무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a) 위원회의 모든 재정 문제 관리
- b) 사무총장이 제시한 지시사항을 토대로 한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 총회에 제출
- c) 연례 회계감사 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을 총회에 제출
- d) 다른 모든 재정적 문제에 대해 총회상임위원회에 보고

재무관은 차기 재무관이 임명될 때까지 재임한다. 재무관이 직무 수행 불능 또는 사임할 경우, 회장은 재무관을 선출할 때까지 즉시 다른 임원을 직무대행으로 임명해야 한다.

제17조 사무총장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수석 집행관이다. 총회에서 임명되고 총회의 재량에 따라 업무를 맡는다. 사무총장은 그가 구성원인 집행위원회의 감독하에 총회와 총회상임위원회의 지시 사항을 수행한다. 사무총장은 중앙사무국을 총괄한다. 사무총장은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제18조 중앙사무국

중앙사무국은 동 위원회의 소재지에 위치한다(제3조). 중앙사무국은 위원회에 필요한 임원들로 구성되고, 사무총장의 지시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제19조 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규격 업무는 고유한 과제를 취급하는 각각의 전문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수행하게 된다. 전문위원회는 이사회에 의해 창설 또는 해체된다. 이들은 이사회의 승인하에 발행된 ISO/IEC 지침서에 의거 전문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되면 신규 전문위원회를 창설해야 한다.

- a) ISO/IEC 지침서에 따라 제안된 경우
- b) 중앙사무국이 전체 정회원 국가위원회에 자문한 경우
- c) 정회원 국가위원회의 2/3 이상이 승인한 경우

d) 최소한 5개 정회원 국가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

e) 업무 범위가 명확히 정의된 경우

정회원 국가위원회는 전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준회원 국가위원회는 전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이사회의 승인하에 발행한 ISO/IEC 지침서에 규정된 P멤버 및 O멤버의 특권을 가질 수 없다. 특히 준회원 국가위원회는 투표권이 없다. 전문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준회원 국가위원회는 최소한 1개월 전에 관련 전문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간사에게 이를 송부해야 한다. 간사는 회의중 그러한 제안을 심의사항으로 상정한다. 의장은 그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안을 제출한 준회원 국가위원회 대표를 초청하여 심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전문위원회의 작업범위는 이사회의 승인에 의해서만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다. 각 전문위원회에는 정회원 국가위원회 대표중에서 이사회가 임명한 위원장과 간사가 있어야 한다.

제20조 재정

동 위원회는 회원국이 중앙사무국에 납부하는 연분담금, 출판물의 판매, 기타 총회에 의해 승인된 재원으로 수입을 조달한다. 연분담금은 모든 회원국에 동일하지 않다. 연분담금은 절차 규정 11항 규정에 따라 총회는 매년 회원국의 익년도 연분담금을 포함한 예산을 결정한다.

이 예산안을 11월 1일까지 모든 국가위원회에 통지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매년 4월 1일전까지 사무총장은 회계전문가가 확인하고 회장과 재무관이 서명한 전년도 회계보고서를 전체 회원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채무와 부채는 전적으로 위원회의 자산으로 보증한다. 채무와 부채에 관한 각 회원국의 재정적 책임은 각 회원국의 분담금 의무를 초과하지 않는다.

제21조 언어

동 위원회의 공용어는 영어, 불어 및 러시아어이다.

제22조 위원회 발간물 및 문서

동 위원회는 총회가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유익하다고 고려하는 발간물이나 문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규격 작업에 관한 발간물과 문서는 이사회의 승인으로 발행한 ISO/IEC 지침서에 의거 발간한다. 정회원과 준회원국은 위원회의 문서, 발간물 및 다른 인쇄물의 사본을 총회상임위원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제23조 절차규정

정관과 양립하여 유지되는 절차규정은 정관 제24조 제1절차에 의거 개정되어야 한다.

제24조 총회 승인절차

총회는 의사결정을 위해 두가지 다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제1절차는 신규 회원국 가입 승인(제5조), 정관 개정(제26조) 및 절차 규정개정(제23조)에 적용된다.

제1절차에 따라 투표에 회부된 제안을 중앙사무국에 의해 회원국에 배포된다. 정회원 국가위원회는 그들에게 제시된 제안사항에 대한 찬반여부를 투표용지에 기입하여 중앙사무국이 발송한 날짜의 2개월 이내에 중앙사무국에 회신하여야 한다. 정회원 국가위원회의 1/5이상이 반대하지 않을 경우, 그 제안을 채택된다.

제2절차는 제1절차 및 해산(제27조)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모든 의결 사항에 적용된다. 제2절차에 의거하여 총회 회의시, 제안사항은 출석하여 투표한 정회원 국가위원회 단순과반수 찬성에 의해 채택된다. 2개월의 기간으로 통신에 의한 투표를 할 경우, 제안사항은 정회원 국가위원회로부터 중앙사무국이 접수한 투표의 단순과반수 찬성에 의해 채택된다.

제25조 법률규정

현행 정관과 절차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들은 동 위원회가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법률에 따른다.

제26조 정관 개정

동 정관에 대한 개정 제안은 서면으로 중앙사무국에 통지되어야 하고 중앙사무국은 개정된 개정안이 총회에서 심의되기 적어도 2개월전에 사본을 전체 회원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총회에서 원안대로 또는 수정되어 승인되면, 정관 제24조의 제1절차에 의거 정회원국에 송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앙사무국은 투표결과를 전체 국가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새로운 정관을 발행해야 한다.

제27조 위원회의 해산

동 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제안은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최소한 회원 국가위원회의 1/4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해산 결정은 발송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신하여야 하는 서면 투표로 행해지며, 최소한 전체 정회원 국가위원회의 4/5이상이 승인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해산될 경우, 총회는 위원회의 자산 처분 방법을 결정한다.